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2020 - 75 |
|----------|-----------|

제출일자 : 2020.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유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나.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노상주차장(43면)

다. 위탁대상 사무

- 주차안내 및 지도
- 주차요금 징수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위탁기간 : 2019. 9. 1. ~ 2020. 8. 31./ 1년간
- 선정방법 : 입찰

마.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0. 11. 23. ~ 2023. 11. 22. / 3년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연중무휴)
 - ㄱ 4월 ~ 10월 : 08:00 ~ 20:00
 - ㄴ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43면(525㎡)

○ 주차요금

| 급지 | 시간 | 1구획 최초 30분까지 | 최초 30분 초과 15분당 | 회수권제 1일 | 정기주차권 (월) | |
|-------|----|-----------------|-------------------|------------|-----------|--------|
| | | | | | 주간제 | 야간제 |
| 노상주차장 | | 500 | 250 | 5,000 | 50,000 | 35,000 |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 노상주차장 관리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 향후일정

- 입찰공고 : 2020. 10.
- 위탁운영 : 2020. 11. 23. ~ 2023. 11. 22. / 계약일로부터 3년

라. 예정가격 : 3,111,120원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위탁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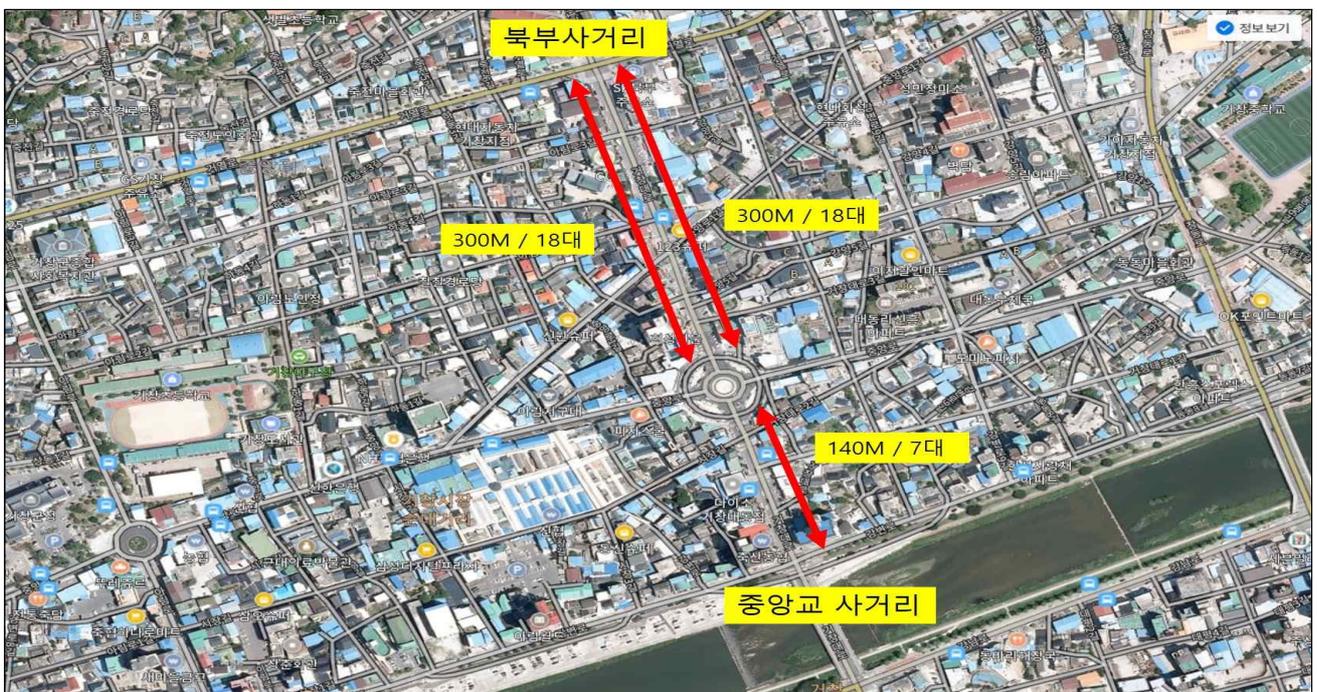
- ◆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 추진하고자 함

I 위탁운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0. 11. 23. ~ 2023. 11. 22.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43면



○ 예정가격 : 3,111,120원

- 산출식

| | | | | | | |
|----------------|---|--------|---|-----------|---|------------|
|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 | × | 대부면적 | × | 대부요율 | = | 대 부 료 |
| 237,038(원/㎡) | × | (525㎡) | × | (25/1000) | = | 3,111,120원 |

(공시일 : 2020.1.1.적용)

| 주차구획선 구 분 |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 | 주차대수 | 1면당 주차면적 | 대부요율 | 합계 |
|--------------|----------------|------|-------------|-------|-----------|
| 계 | | 43 | | | 3,111,120 |
| 일 반 | 237,038 | 41 | 2m×6m | 0.025 | 2,915,567 |
| 장애인 | 237,038 | 2 | 3.3m×5m | 0.025 | 195,556 |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Ⅲ 그간 추진사항 및 운영현황

- 2019. 5. :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계획보고
- 2019. 6. :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결과 : 원안가결
- 2019. 7. : 노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 2019. 7. 31. : 위수탁 계약 체결
 - 대 상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기 간 : 2019. 8. 1. ~ 2020. 7. 31.
 - 위 탁 료 : 3,169,590원
- 2019. 8. 6. : 위수탁 계약 포기
 - 사 유 : 2019년 8월 1일 공영주차장 관리인(권영철)의 업무 중 사고(뇌진탕)로 인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불가능

- 2019. 8. 19. ~ 30 :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입찰 공고 및 선정
 - 위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위탁기간 : 2019. 9. 1 ~ 2020. 8. 31. / 1년간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사거리 / 47면
 - 위 탁 료 : 4,530,000원

IV 향후계획

- 2020. 10. : 입찰 공고
- 2020. 11. 23. ~ 2023. 11. 22. : 위탁 운영

V 기대효과

- 장기주차방지, 중심상가 방문객 증가, 지역상원 활성화 유도
- 자동차 이용을 자제시키고, 주차면 회전율 상승을 통한 주차난 해소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확보의 선순환 형성
- 도심주차환경 불편해소와 인근상가 이용 고객 증가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삭제(2016.12.28.)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